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해양수산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지역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639호, 2026. 5. 12. 공포, 2027. 5. 13. 시행)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광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지역협의회**”로 한다.

별표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의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                          | 법 제25조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       |       |       |
|-------------------------------------------------------------------------------|------------------|-------|-------|-------|
| 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항제2호            |       |       |       |
| 마. 삭제 <2025. 9. 2.>                                                           |                  |       |       |       |
| 바.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br>제2항제1호 | 20만원  |       |       |
| 사.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br>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25조<br>제2항제2호 | 30만원  |       |       |
| 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br>1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br>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br>구성·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br>항에 따른 <u>광역연안사고예방협<br/>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br/>회</u>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br>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br>한다. |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br>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br>구성·기능 등) ① -----<br>----- <u>광역연안사고예방협<br/>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br/>다)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br/>(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u> --- |
| ② <u>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br/>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br/>역협의회”라 한다)의</u> 위원장은<br>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 ② <u>광역협의회</u> -----<br>-----<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u>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br/>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br/>역협의회”라 한다)의</u> 위원장은<br>해양경찰서장이 된다.                                                                         | ④ <u>지역협의회</u> -----<br>-----<br>-----<br>-----.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의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                  |       |       |       |
|---------------------------------------------------------------------------------------------|------------------|-------|-------|-------|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br>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br>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br>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5조제<br>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삭제 <2025. 9. 2.><br>바.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br>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br>제2항제1호 | 20만원  |       |       |
| 사.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br>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br>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br>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제1항<br>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br>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br>보를 알린 경우 | 법 제25조<br>제2항제2호 | 30만원  |       |       |
| 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br>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br>경우                                               | 법 제25조제<br>1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
| 연 락 처       | (032) 835 - 2239 |